’20.3월 시행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묻고 답하기

– 부모용 –

2020.2.21. Ver.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개편 추진단

- 목 차 -

1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 관련 1p

1.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왜 하나요?
2.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우리 아이에게는 무엇이 좋아지나요?
3. 2020년 3월이면 모든 어린이집에 연장보육반이 개설되나요?
4. 현재 우리 어린이집은 저녁 7시 반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연장보육을 도입해야 하나요?
5. 어린이집 연장반 운영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6.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이 안 되어 현재 담임선생님이 겸직을 하면, 선생님은 더 힘들어지시는 것 아닌가요?
7. 기본보육반과 다른 선생님으로 연장보육반 선생님이 바뀌면 아이의 정서적 문제는 없나요?

2 어린이집 이용 관련 5p

8. 기본보육만 선택하는 경우 반드시 16시 전에 하원해야 하나요?
9. 기본반 담임 선생님은 16시면 퇴근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10. 기본반 담임 선생님이 16시부터 보육을 하지 않게 되면, 아동의 하원 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1. 어린이집 입소 확정 시 연장보육 이용 여부도 함께 확정해야 하나요?
12. 아동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상담을 하고 싶은데, 누구와 하게 되는 건가요?

3 연장보육 신청 및 자격 관련 7p

13. 연장보육이 도입되면 맞춤반 자격은 없어지나요? 연장보육은 자격이 있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나요?
14. 연장보육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연장보육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15. 지금은 기본보육만 이용하다가, 복직할 때 맞춰 연장보육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16. 기본보육만 선택했지만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긴급보육바우처는 없어지나요?
17. 기존 종일반·맞춤반 자격 아동은 새로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하나요?
18. 공무원 시험, 공공기관·민간기업 공채, 국가자격시험 등을 준비 중인 부모는 연장보육 자격이 있나요?
19. 0~1세반이 아닌 자녀가 2명 있는 경우에도 연장보육 자격이 있나요?
20. 부모가 방송통신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에 재학하거나 대학원 수료 후 박사논문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연장보육 자격이 있나요?
21. 육아휴직 복직자는 어떻게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하나요?
22.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근무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 연장보육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3. 기본반 아동이 간헐적인 보육 수요가 있어서 연장보육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월 이용시간 제한이 있나요? 비용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24. 우리 아이는 시간연장을 하기 위해 5시 경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경우 연장보육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4 연장보육 운영 및 이용 관련 11p

25. 연장보육 아동이 우리 아이 하나만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연장반 아동이 소수인 경우,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반 운영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26.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종일반보다 보육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27. 원장님이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전담교사가 채용되지 못하면 연장반을 운영하지 못하는 건가요?

28. 연장반을 이용하면 반드시 매일 17시 이후에 하원을 해야 하나요?
29. 연장반을 신청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30. 연장반을 신청하고 싶은데 정원이 꽉 차 있어서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나요?
31. 연장보육 신청 후 이용하다가 기본반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32. 가정양육 아동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연장보육만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나요?
33. 매일이 아닌 특정 요일에만 연장보육을 이용해도 되나요?
34. 연장반 전담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35. 연장보육 시간은 어떻게 운영 되나요? 별도 보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36. 연장보육 아동에게 급간식이 제공 되나요?
37. 연장보육 시간 동안 학원에 다녀와도 되나요?
38. 연장보육 이용으로 인한 부모의 자부담은 발생하나요?
39. 연장보육료는 아이사랑 카드로 별도 결제를 해야 하나요?
40. 외국인 아동인데, 연장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5 전자출결시스템 및 출결 관련 16p

41. 전자출결 시스템은 왜 도입하나요?
42.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 시, 전자출결 도구(태그)를 꼭 지참해야 하나요? 깜박하고 못 가져간 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43. 전자출결 도입 시 아동의 출석 체크는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44.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 등원 후 하원하는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이 되나요?
45. 아동 태그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을 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시 처벌받게 되나요?
46. 장애 아동인 경우 재활치료 등으로 잦은 지각, 조퇴, 결석이 있는데 출석인정 특례 대상인지?
47. 연장반에는 출석인정 특례가 없나요?

1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 관련 1p

1.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왜 하나요?

○ 아동과 교사, 부모와 원장 모두를 위해 위해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19시 30분까지 교사를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12시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 이러한 환경에서 보육교사는 초과근무가 일상이 되고, 휴게시간이나 보육과정 연구, 행정업무 시간은 늘 부족하였습니다.

- '어린이집'에는 장시간 보육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어, 장시간 보육을 제공할 유인이 부족했습니다.

○ '아동과 부모님들'은 늦게까지 보육이 필요한 경우 전담 교사 없이 지친 당번 교사가 남아 보육을 하는 등 안정적 보육 환경이 보장되기 어려웠습니다.

○ 이에 16시까지의 기본보육과 그 이후의 연장보육으로 나누어,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연장 보육료를 신설하여

-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보다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우리 아이에게는 무엇이 좋아지나요?

○ 우선, 보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되면 담임교사의 보육시간이 단축되어, 보육을 준비하고 연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휴게시간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19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의 초과근로가 줄어들고, 준비시간과 휴게시간을 갖게 되어 보육교사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는 아이들에 대한 활기찬 보육으로 이어져 부모님과 아이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시범사업 심층면담 결과>

- 저는 저희 생활이나 아이들보다는 선생님들의 질이 바뀌어서 그 부분이 나중에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거 같아서 … 오후에 투입되는 선생님들 덕분에. 선생님들의 에너지가 많아지면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니까 그 부분에서 좋은 거 같아요. (학부모)
- 하루 종일 아침부터 6시까지 계속 아이들이랑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아이들한테 좀 불친절하게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개편되고 나서부터는 담당 선생님이 딱 알아서 해주시니까…(교사)

○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을 보다 잘 돌보게 됩니다.

- 장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다수의 아동이 하원한 이후, '남아서 하원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 고정적인 연장반 친구들과 전담 교사와 함께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시범사업 심층면담 결과>

- 좋았던 점은 이거를 신청하면서 그래도 평균 5~6명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왜 너무 없으면 아이들이 그것도 그럴 텐데 같이 꾸준히 있으니까 그거는 되게 의지할 수 있고 놀 수 있고(학부모)
- 전담 선생님이 오시면서 그 전에 '아,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런 부담들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 부모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해요. 부담이 좀 줄어들거든요(학부모)

3. 2020년 3월이면 모든 어린이집에 연장보육반이 개설되나요?

○ 연장보육에 대한 연장보육료와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은 2020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 다만, 어린이집별로 연장반 구성, 교사 채용 등 준비 상황에 따라서 운영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2020년 3월부터 연장보육반 운영을 시작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현재와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현재 우리 어린이집은 저녁 7시 반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연장보육을 도입해야 하나요?

○ 연장반 도입 시점 및 여부는 어린이집의 여건, 상황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 만일 연장반 도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종일반 및 당번제의 통합보육 운영 등을 통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 다만,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입소 대기를 신청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연장반 운영 여부, 전담교사 배치 여부 등을 아이사랑 포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5. 어린이집 연장반 운영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내년 3월 이후 아이사랑 보육포털 사이트에 해당 어린이집의 연장보육 현황(연장반 운영 여부, 전담교사 배치 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연장보육 현황 정보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시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6.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이 안 되어 현재 담임선생님이 겸직을 하면, 선생님은 더 힘들어지시는 것 아닌가요?

○ 연장반 전담교사가 신규 채용되지 않는 경우는 현재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게 됩니다.

- 이 경우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당번제로 운영하는 경우 또는 한 명의 선생님이 전담하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 담임선생님이 연장반 교사를 겸직 하는 경우 근로기준 관련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교사에게 최대한 부담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7. 기본보육반과 다른 선생님으로 연장보육반 선생님이 바뀌면 아이의 정서적 문제는 없나요?

○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연장보육 시간에 연장반 아동을 전담하기 위해 배치되기 때문에, 아동에게 보다 집중할 수 있어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에 도움이 됩니다.

○ 현재에는 다수 아동이 하원한 이후에는 당번 교사에 의해 보육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 바뀌는 당번 교사 보다는 동일한 전담 교사를 통한 보육이 보다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장보육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므로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로, 담임교사의 하원지도 시간에 남겨지지 않고 연장보육 교사에게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어린이집 이용 관련 1p

8. 기본보육만 선택하는 경우 반드시 16시 전에 하원해야 하나요?

○ 기본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16시 하원시각을 최대한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 규칙적인 생활은 아동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기본보육 시간을 준수해야 담임교사의 보육 연구 시간, 휴게시간 등의 확보가 가능해져 **보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9. 기본반 담임 선생님은 16시면 퇴근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 기본반 담임선생님은 기본보육 아동이 하원한 이후에는 내일 수업 준비 등 보육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은 현재와 동일하게 8시간 근로 및 1시간 휴게시간을 포함 총 9시간이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10. 기본반 담임 선생님이 16시부터 보육을 하지 않게 되면, 아동의 하원 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기본반 아동 하원 지도는 기본적으로 현재와 동일하게 담임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다만, 기본반 아동의 하원이 늦거나,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 등에 따라 연장반 또는 통합반의 선생님에게 하원지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1. 어린이집 입소 확정 시 연장보육 이용 여부도 함께 확정해야 하나요?

○ 어린이집 입소 확정 시점에는 연장보육 수요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연장보육 이용 여부는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입소확정 시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도중에 연장보육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 이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12. 아동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상담을 하고 싶은데, 누구와 하게 되는 건가요?

○ 아동의 어린이집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현재와 동일하게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시면 되고,

- 연장반 이용 아동의 경우 연장보육 시간의 생활에 대한 사항은 연장보육 전담교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연장보육 신청 및 자격 관련 1p

13. 연장보육이 도입되면 맞춤반 자격은 없어지나요? 연장보육은 자격이 있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나요?

○ 0-2세반 영아의 경우, 연장반을 이용하려면 현재의 종일반 자격과 유사한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구직·취업·구직활동, 돌봄수요 인정 범위를 확대·개선하고, 서식의 간소화(기존 종일반 사유확인서·자기기술서→연장보육 신청 사유서)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 3-5세반 유아는 별도 자격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누구나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연장보육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연장보육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연장보육 신청은 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 우선 어린이집에서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다음으로, 0-2세반 영아의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자격을 신청하고 시군구로부터 자격 결정을 받은 후 어린이집에 이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3-5세반 유아의 경우는 별도의 자격 결정이 필요 없으며 어린이집에 이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5. 지금은 기본보육만 이용하다가, 복직할 때 맞춰 연장보육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기본보육반을 이용하다가 연장보육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신청을 하면 됩니다.

- 0-2세반 영아의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자격신청・확정 후 이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6. 기본보육만 선택했지만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긴급보육바우처는 없어지나요?

○ 긴급보육바우처는 없어집니다.

○ 하지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신청하여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7. 기존 0-2세반의 종일반・맞춤반 자격 아동은 새로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하나요?

○ 기존 종일반 자격 아동은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보육 자격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다만 연장반 편성, 배치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 연장보육 이용 여부, 시간 등을 확인・결정하셔야 합니다.

○ 다만, 기존 맞춤반 자격 아동이 연장보육을 이용하려면 어린이집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 연장보육 이용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18. 공무원 시험, 공공기관・민간기업 공채, 국가자격시험 등을 준비 중인 부모는 연장보육 자격이 있나요?

○ 구직 중인 부모는 구직등록확인증 또는 구직・취업준비 관련 학원 수강증을 제출할 경우 연장보육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1회 인정

○ 이후에 임용・채용 등이 된 경우에는 '취업(임금근로자 등)'으로 연장보육 자격 사유의 변경을 신청하고

- 임용・채용이 되지 않더라도, 임용・채용시험 또는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면접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신청 후 1년 동안 연장보육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인정

19. 0~1세반이 아닌 자녀가 2명 있는 경우에도 연장보육 자격이 있나요?

○ 다자녀 가구의 범위가 3→2명으로 확대되어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연장보육 자격이 인정됩니다.

20. 부모가 방송통신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에 재학하거나 대학원 수료 후 박사논문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연장보육 자격이 있나요?

○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재학 기간 동안 연장보육 자격이 인정됩니다.

○ 대학원 수료 후 석사 또는 박사 과정 논문을 준비할 경우 논문심사의뢰서(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를 제출하면 1년 간 연장보육 자격이 인정됩니다.

21. 육아휴직 복직자는 어떻게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하나요?

○ 육아휴직 복직자는 복직예정일의 30일 전부터 복직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부터 복직예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장보육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직 후에는 '취업'으로 연장보육 자격 사유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22.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근무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 연장보육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를 작성·제출하여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자격 부여는 시군구에서 진행, 결정

- 신청서를 간소화하여 기존 '자기기술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3. 기본반 아동이 간헐적인 보육 수요가 있어서 연장보육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월 이용시간 제한이 있나요? 비용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 기존의 긴급보육바우처는 월 이용시간이 15시간으로 제한이 있었지만, 간헐적 보육 수요의 경우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 비용은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며, 부모님의 부담은 없습니다.

* 전자출결시스템으로 기록된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24. 우리 아이는 시간연장을 하기 위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경우 연장보육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 시간연장(야간연장) 이용을 전제로 어린이집을 이동하는 경우, 이동한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신청 및 이용하시게 됩니다.

④ 연장보육 운영 및 이용 관련 1p

25. 연장보육 아동이 우리 아이 하나만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연장반 아동이 소수인 경우,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반 운영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연장보육 신청 아동이 소수인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또는 기존 형태의 통합보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 다만 연장보육 아동 수가 적어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영아 3명, 유아 8명)에 미달하게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겸직을 통해 연장보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이 경우에도 시간당 연장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지급됩니다.

26.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보육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 연장보육 신청 아동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은 연장보육(또는 기존 형태의 통합보육)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연장보육 신청 아동이 한 명도 없어서 연장반이 없는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으나,

- 이 경우에도 어린이집의 12시간 운영 원칙은 동일하며, 긴급한 연장 보육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통합보육 등을 통해 보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7. 원장님이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전담교사가 채용되지 못하면 연장반을 운영하지 못하는 건가요?

○ 연장반 전담교사가 별도로 채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연장보육 수요가 있다면 연장반을 운영해야 합니다.

○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 담임교사의 연장반 겸직이 가능하며,

- 이 경우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당번제로 운영하는 방식 또는 한 명의 선생님이 전담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원장 선생님이 어린이집의 여건과 연장보육 아동의 이용시간, 아동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28. 연장반을 이용하면 반드시 매일 17시 이후에 하원을 해야 하나요?

○ 연장보육은 안정적인 연장보육반 운영을 위해 고정적으로 17시 이후의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 연장보육료를 17시 이후 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연장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은 교사를 배치하거나 연장반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아동 수와 이용 시간에 따라 인건비가 지원되므로 고정적인 수요가 있는 경우 신청·이용하셔야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연장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고정적 보육수요가 아닌 경우에는 필요할 때 신청하여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9. 연장반을 신청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연장보육 신청 후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 기본보육으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연장보육은 고정적으로 17시 이후의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 연장보육 아동 수와 연장반 아동의 연장보육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만일 연장반을 신청하여 연장반에 편성된 아동이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이 어려워져 안정적인 연장보육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연장보육을 신청할 때는 고정적으로 17시 이후 이용하게 될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연장반을 신청하고 싶은데 정원이 꽉 차 있어서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나요?

○ 연장반 정원이 꽉 찬 상태에서 연장보육 아동 수가 늘면,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또는 겸직교사 배치 등 연장반 추가 편성에는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존 연장반에 간헐적 보육 수요를 위한 탄력 정원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어, 연장반 정원이 차있는 경우에도 연장보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1. 연장보육 신청 후 이용하다가 기본반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연장보육 이용 사유가 없어지는 경우, 어린이집과 상담을 통해 기본반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32. 가정양육 아동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연장보육만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나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보육료 자격 아동)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비용(연장보육료, 전담교사 인건비)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 가정양육 아동(가정양육수당 자격 아동), 유치원 이용 아동(유아학비 자격 아동)이 연장보육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상담을 통해 자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부담을 하는 경우 연장보육 인건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33. 매일이 아닌 특정 요일에만 연장보육을 이용해도 되나요?

○ 연장보육 신청 여부는 필요한 시간, 총 이용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집과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 특정 요일에만 이용하는 경우라고 해도 월 이용시간이 긴 경우 연장보육 신청이 필요할 수 있고, 월 이용시간이 짧은 경우는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고 간헐적 보육 수요로 연장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4. 연장반 전담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 연장반 전담교사는 담임교사와 동일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35. 연장보육은 어떻게 운영 되나요? 별도 보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 연장보육은 돌봄과 쉼, 놀이 위주로 운영됩니다.

36. 연장보육 아동에게 급간식이 제공 되나요?

○ 연장보육의 급간식 제공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연장보육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연장보육 시간에 급간식을 제공받고자 한다면 부모님이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37. 연장보육 시간 동안 학원에 다녀와도 되나요?

○ 아동이 드나드는 것은 남아있는 아동의 안정적 보육환경에 좋지 않기 때문에 연장보육 이용 아동이 학원에 다녀오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병원 진료나 재활치료를 다녀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38. 연장보육 이용으로 인한 부모의 자부담은 발생하나요?

○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른 연장보육료는 정부에서 어린이집으로 전액 지원하며, 자부담은 없습니다.

39. 연장보육료는 아이사랑 카드로 별도 결제를 해야 하나요?

○ 연장보육료는 전자출결시스템에 기록된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별도의 결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0. 외국인 아동인데, 연장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연장보육은 보육료 자격 아동에게만 지원됩니다. 보육료 자격이 아닌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 아동 등은 연장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며, 별도 자부담을 통해 이용하셔야 합니다.

5 전자출결시스템 관련 1p

41. 전자출결시스템은 왜 도입하나요?

○ 연장보육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은 시간만큼 시간당 보육료가 어린이집에 지급되므로, 아동의 등·하원 시간이 으로 체크되는 시스템을 설치하게 됩니다.

○ 이와 동시에 아이의 등하원 시간이 부모님에게 문자로 전송되는 '안심 등하원 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되어 보다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출결시스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리더기 및 아동당 Tag 비용)은 국가에서 예산 지원('20년에 한해)됩니다.

42.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 시, 전자출결 도구(태그)를 꼭 지참해야 하나요? 깜박하고 못 가져간 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자출결 도구를 지참하지 않은 날은 수기 전자출결로 어린이집에서 등하원 시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전자출결을 이용해야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아동이 태그를 잘 가지고 다니도록(가방에 부착 등)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3. 전자출결 도입 시 아동의 출석 체크는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에 아동 등원 시각이 기록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44.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 등원 후 하원 하는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이 되나요?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에 아동의 등원 시각이 기록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므로, 등원 후 조퇴하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45. 아동 태그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을 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시 처벌받게 되나요?

○ 부정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의한 비용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6. 장애 아동인 경우 재활치료 등으로 잦은 지각, 조퇴, 결석이 있는데 출석인정 특례 대상인지?

○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에 아동의 등원 시각이 기록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고, 조퇴나 지각 등 역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아동이 질병·부상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그 밖에 부모의 입원·출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감염병·자연재해 및 재난 등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특례가 인정됩니다.

○ 한편 연장보육 시간에 병원이나, 정부 바우처 지원 기관으로 재활치료를 다녀오는 경우는 연장보육 이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47. 연장반에는 출석인정 특례가 없나요?

○ 연장보육 시간은 출석 여부를 통해 지원을 결정하고 있지 않고 월 이용시간을 확인하여 연장보육료를 지원하므로 별도 출석인정 특례가 없습니다.